

##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

### ■ 업무내용

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임황, 지황 등 산림 현황 조사

### ■ 등록기준

#### 1. 자본금

법인	개인
1억원 이상	불가

- 각 산림사업의 종류(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)에 요구되는 최소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.
-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1억원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.
- "자본금"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총족하여야 한다.

#### 2. 기술능력

##### 기술자격

- 기술 중급 이상 산림 경영기술자 1명 이상
- 기술 초급 이상 산림 경영기술자 2명 이상

※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하며,  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  
※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[별표2]  
-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종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.

#### 3. 시설 · 장비

##### 사무실
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
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##### 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